

# 주정부 단위의 농업 시간외수당에 관한 정책 변화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김정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미국에서 농업 노동자는 전통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 등 각종 임금 관련 보호정책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행적으로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고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등 농업만의 산업적 특수성이 그 이유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농업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임금차별이나 노동환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많은 (자영업자를 제외한) 피고용 농업 노동자가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당한 노동권이 임금제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에 힘입어, 최근 2년간 6개의 주에서 농업 노동자의 시간외수당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관련 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글은 농업 노동자의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최근 주정부 단위의 변화를 소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정치적 반응도 살펴보고자 한다.

## ■ 농업 시간외수당의 정책 현황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업 시간외수당에 관해서는 주정부 단위의 정책이 전통적으로 전

무한 실정이었다. 다만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관련 법안이 제정된 바 있었다.<sup>1)</sup> 미국 연방정부의 「공정노동기준법」<sup>2)</sup>에 따르면, 농업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 경계를 넘어 거래 (interstate commerce)하는 사업자<sup>3)</sup>는 해당 법의 최저임금 및 시간외수당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예외가 존재하는데, 먼저 분기 기준으로 노동일<sup>4)</sup>이 500일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법의 최저임금 및 시간외수당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노동자가 사업주의 직계가족일 경우, 개수급<sup>5)</sup>을 받으며 전년도에 13주 미만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 그리고 만 16세 미만이면서 부모와 같은 농장에서 일하였고 16세 이상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개수급을 받는 경우 등이 예외로 인정된다. 이 중 가장 큰 예외는 주 경계를 넘어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정부 단위에서는 2021년 6월 현재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메릴랜드주, 미네소타주, 뉴욕주, 워싱턴주 등 총 6개의 주에서 농업 시간외수당 관련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sup>6)</sup>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이러한 주들에는 유색인종이나 이민자가 많이 거주한다. 반면, 농업이 발달한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주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 법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농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주에서 농업 노동자의 시간외수당 관련 법안을 더욱 빠르게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각 주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1) U.S. Department of Labor(2020), “Fact Sheet #12: Agricultural Employers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FLSA)”, <https://www.dol.gov> (검색일: 2021.6.20).

2) Fair Labor Standards Act.

3) 많은 경우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이에 해당함.

4) 노동일(man-day)은 한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노동한 일자를 1일의 노동일로 계산하여 모두 더한 값이다. 즉, 하루에 최소 1시간을 일한 경우에도 1일의 노동일로 계산한다.

5) 개수급(piece rate)은 가장 기초적인 성과급으로서 생산의 양이나 질에 의해 수입을 측정하는 임금체계를 일컫는다.

6) Farmworker Justice(2021), “Overtime Map”, <https://www.farmworkerjustice.org> (검색일: 2021.6.20).

## ■ 주별 농업 시간외수당에 관한 정책의 변화

### 캘리포니아주

먼저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도 농업 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2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농업 사업자는 2019년 1월부터 1일 9.5시간 또는 1주 55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에게 기본급여의 0.5배로 산정한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2020년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1일 9시간 또는 1주 50시간으로, 2021년에는 1일 8.5시간 또는 1주 45시간, 그리고 2022년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으로 조건이 변경된다. 또한 2022년에는 1일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기본급여의 1배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5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1일 10시간, 1주 60시간, 또는 7일 연속 8시간이 넘어가는 노동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3년간 유예되어 적용된다.<sup>7)</sup>

### 하와이주

하와이주의 법은 시간외수당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다른 주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와이주의 시간외수당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주당 40시간이 넘어가는 노동시간에 한해서 기본급여에 추가로 0.5배의 시간외수당을 더해 지급하여야 한다.<sup>8)</sup> 여기에 주말, 공휴일 등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와 달리 일별로 시간외수당 조건을 지정하지도 않고 있다. 또한 농업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예외가 여러 개 존재한다. 먼저, 농업 사업자는 각 연도마다 20주 동안 48시간에 걸쳐 시간외수당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기준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

7) CAL LAB. CODE §§ 860, 862.

8) Haw. Rev. Stat. § 387-3.

한 일주일에 20인 미만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자는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커피를 추수하는 노동을 한 경우에도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다.<sup>9)</sup> 이처럼 하와이주의 농업 시간외수당 관련 법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메릴랜드주

앞서 살펴본 하와이주와 비슷하게, 메릴랜드주의 시간외수당 관련 법 또한 적용 기준이 상당히 한정적이다. 먼저 메릴랜드주의 농업 시간외수당 관련 법은 주당 60시간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sup>10)</sup> 또한 이 기준에도 다수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먼저 관련 연방 정부의 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개수급을 받는 경우, 노동자가 지난해에 13주 이상을 농업 노동자로 일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분기별로 500일의 노동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7세 미만이면서 부모와 같은 농장에서 일하였고 17세 이상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개수급을 받는 경우도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sup>11)</sup>

## 미네소타주

미네소타주는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였을 경우, 다른 주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0.5배의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더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미네소타주의 경우에는 예외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노동자가 시간당 임금 등이 아닌 정규급여(salary)를 받는 경우에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때 정규급여의 수준은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주당 735달러(약 83만 원),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주당 599달러(약 68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sup>13)</sup>

9) Haw. Rev. Stat. § 387-3(e).

10) Md. Code Ann., Lab. & Empl. § 3-415(a), Md. Code Ann., Lab. & Empl. § 3-420(c).

11) Md. Code Ann., Lab. & Empl. § 3-403.

12) Minn. Stat. § 177.25.

13) Minn. Stat. Ann. § 177.23 Subd. 7(2). 대규모 사업자는 연간 50만 달러(약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 뉴욕주

2019년에 뉴욕주는 「농장노동자 공정노동관행법」<sup>14)</sup>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2020년 1월부터 주당 60시간을 일하였다면 농업 노동자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 노동자에게 1주일에 하루는 휴식일을 보장하되, 노동자가 해당 휴식일에 자발적으로 노동을 결정하였다면 이 날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농업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2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와 연간 수익이 50만 달러(약 6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뉴욕시는 노동자가 주당 1,125달러(약 128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웨스트체스터와 롱아일랜드 카운티는 주당 975달러(약 11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뉴욕주 지역은 937.5달러(약 106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sup>15)</sup>

## 워싱턴주

마지막으로 워싱턴주의 경우, 2021년 5월에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가 상원법안 5172(Senate Bill 5172)에 서명함으로써 농업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였다.<sup>16)</sup> 해당 법안에 따르면, 모든 농부와 농업을 자신의 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2022년 1월부터 55시간 이상 노동한 노동자에게 시간당 1.5배의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해당 기준은 2023년에는 48시간, 2024년에는 40시간으로 줄어 시간외수당의 지급이 점차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에서나 예외의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17)</sup>

기록한 사업자로 정의된다. 해당 정의에 대해서는 Minn. Stat. § 177.24 참조.

14) Farm Laborers Fair Labor Practices Act.

15) N.Y. LAB. LAW § 163-a.

16) Engrossed Substitute Washington Senate Bill 5172(2021).

17) Geranios, N.(2021), "Washington Governor Signs Agriculture Worker Overtime Bill", *The AP News*, May 11, <https://apnews.com> (검색일 : 2021.6.20).

## ■ 농업 시간외수당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 : 워싱턴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변화는 미국의 농업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여러 정치적인 반응 및 움직임들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에 관련 법이 도입된 주이자 상당히 진보적인 형태로 정책 변화를 보인 워싱턴주의 사례에 맞추어 해당 반응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9월에 워싱턴주 대법원은 농업 노동자를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이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법원의 결정은 마르티네스-쿠에바스 대 데루터 브라더스 낙농업 사건<sup>18)</sup>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인 호세 마르티네스-쿠에바스(Jose Martinez-Cuevas)와 패트리샤 아귈라(Patricia Aguilar)는 이들의 고용인인 데루터 브라더스 낙농업에 대해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당시까지만 해도 농업 노동자는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면제되는 상황이었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면제가 공정한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주의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원고들은 위와 같은 면제조건이 생겨난 이유를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찾았다. 사실 이와 관련한 역사적 기원은 미국 연방 정부가 1938년에 최초로 도입한 공정노동기준법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역사학자와 인종문제 연구자는 당시 농업이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에서 특별히 제외된 이유가 흑인들과 그들의 노동권을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역사적 결론에 기반할 경우, 현재 워싱턴주 노동법의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농업만 특별히 제외된 이유가 인종차별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에 원고들은 이같은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워싱턴주 상원은 농업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과 워싱턴주 농업협회(Washington Farm Bureau)는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해당 법안이 워싱턴주의 농업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

18) Martinez-Cuevas v. Deruyter Brothers Dairy Case.

19) O'Neill, E.(2020), "Washington Farmworkers Ask State Supreme Court for Overtime Pay", NPR, August 2, <https://www.npr.org> (검색일 : 2021.6.20).

다.<sup>20)</sup>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농업 사업자는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기후, 계절별 환경 변화,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시간외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워싱턴주의 농업은 다른 주나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워싱턴주의 농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적어도 워싱턴주에서는 대부분의 농업 노동자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적용대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는 것이 인종차별적이라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현재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수적인 견해와 일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 노동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화가 다른 주에까지 확산될 것인지와 관련한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맺음말

이 글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수준에서 시행된 농업 시간외수당 정책을 간략히 살펴본 후, 최근 6개의 주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농업의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화 정책과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해당 변화에 따른 정치적인 반응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농업의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도 2021년 6월 현재, 농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sup>21)</sup>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변화가 한국의 노동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예상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KLI**

20) King, C., J. Warnick, and the Washington Farm Bureau(2021), "Guest Commentary: Let's Set the Record Straight on Agriculture Overtime Issue", *Yakima Herald*, May 22, <https://www.yakimaherald.com> (검색일: 2021.6.20).

21) 근로기준법 제 63조(2021.1.5).